

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·절차 등(제38조제1항 관련)

1. 검사시기

가.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

- 1)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
- 2)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

나.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

- 1) 석유정제업자나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. 다만,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
- 2) 석유정제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

2. 시료채취와 시험방법

가. 검사시료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)[이하 "한국산업표준(KS)"이라 한다]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.

나. 시험방법

- 1)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(KS)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표준(KS)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.
- 2) 한국산업표준(KS)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.

3. 검사 결과의 처리

가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

- 1) 검사 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,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,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,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2)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

로 판정한 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,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,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나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처리

- 1)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,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.
- 2)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과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51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,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라.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52호서식과 별지 제53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그 밖의 사항

품질검사와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